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2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4. 28.
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세종문화회관을 대관하고자 할 때 그 순위를 우선할 경우 타 대관신청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.
-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지키고자 대관료 감면 규정은 유지하고, 우선 순위 부여 규정을 대관심의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.

2. 수정주요내용

- 가. 장애예술인 단체가 세종문화회관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(안 제6조의2제4항)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사장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,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6조의2(대관심의회) ① ~ ③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6조의2(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사장은 장애예술 인 단체가 대관하고 자 할 때, 그 순위를 우선 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 인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의2(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례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사장은 장애예 술인 단체가 대관 하고자 할 때 대관 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,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“대관심의회”를 “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사장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,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<u>대관심의회</u>) ① ~ ③(생략) <신 설></p>	<p>제6조의2(<u>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례</u>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사장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,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.</u></p>